기획재정부 보도자료 APEC 2025 KOREA

보도시점 2025. 9. 11.(목) 11:00 배포 2025. 9. 11.(목) 08:00

인공지능(AI) 국가전략기술 신설 등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

- 「2025년 세제개편안」과 「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」 이행을 위한 규정 마련

기획재정부는 「2025년 세제개편안('25.7.31.)」 및 「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('25.8.14.)」 이행을 위해 AI 등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, 인구감소지역 주택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완화 등을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.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, 차관회의·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11월 중 공포·시행될 예정입니다.

*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, 소득세법 시행령, 법인세법 시행령,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, 부가가치세법 시행령,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

※ 입법예고 기간

- 조특령 등 기타 시행령 : '25.9.12 ~ 10.22(40일)

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【 참 고 】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

※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. (044-215-내선번호)

▪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양도관련(4312), 법인관련(4223), 기타(4131),
소득세법 시행령 소득관련(4211), 양도관련(4312),
법인세법 시행령 법인관련(4221), 재산관련(4312), 국제조세관련(4653)
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(4313), 부가가치세법 시행령(4321)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(4661)

담당 부서	세제실 조세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문건 (044-215-4110)
		담당자	사무관	송유민 (youmin020@korea.kr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APEC 2025 KOREA 10.27.~11.1. 경주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 **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**

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】

1.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 신설 및 확대(조특령 별표7의2)

<table>
<tr><th>현 행</th><th>개 정 안</th></tr>
<tr><td>□ R&D비용 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* 세부기술
* 일반 R&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 (중소 40~50%, 중견·대 30~40%) 적용

○ 7개 분야* 71개 기술
* ①반도체 23개, ②이차전지 10개, ③백신 7개, ④디스플레이 8개, ⑤수소 10개, ⑥미래형운송·이동수단 5개, ⑦바이오의약품 8개

<추 가></td><td>□ 세부기술 대상 확대

○ 8개 분야* 78개 기술
* 인공지능 분야 추가

- 7개 신설, 2개 확대

▪ (신설) 7개

<table>
<tr><th>분야</th><th>세부기술</th></tr>
<tr><td rowspan="5">인공지능 (5개)</td><td>생성형 인공지능</td></tr>
<tr><td>에이전트 인공지능</td></tr>
<tr><td>학습 및 추론 고도화</td></tr>
<tr><td>저전력·고효율 인공지능 컴퓨팅</td></tr>
<tr><td>인간 중심 인공지능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미래형 운송이동 (2개)</td><td>인공지능형 자율운항</td></tr>
<tr><td>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</td></tr>
</table>

▪ (확대) 2개

<table>
<tr><th>분야</th><th>세부기술</th></tr>
<tr><td rowspan="2">미래형 운송이동 (2개)</td><td>주행상황 인지 센서·소프트웨어
→ 센서, 소프트웨어 단독도 적용</td></tr>
<tr><td>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
→ 핵심부품 인정을 위해 범위 확대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/table>

<개정이유> 첨단 전략산업 R&D 활성화

<적용시기> '25.7.1. 이후 발생하는 비용 또는 투자 분부터 적용, 다만, **인공지능** 분야와 미래형 운송·이동수단 분야 중 **인공지능형 자율운항**과 관련된 세부기술의 경우에는 **'25.1.1. 이후 발생하는 비용** 분부터 적용

2. 신성장·원천기술 세부기술 신설(조특령 별표7)

<table>
<tr><th>현 행</th><th>개 정 안</th></tr>
<tr><td>□ R&D비용 세액공제 대상
신성장·원천기술* 세부기술

* 일반 R&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
(중소 30~40%, 중견·대 20~30%) 적용

○ 14개 분야* 273개 기술

* ①미래차, ②지능정보, ③차세대S/W
④콘텐츠, ⑤전자정보 디바이스,
⑥차세대 방송통신, ⑦바이오·헬스,
⑧에너지·환경, ⑨융복합소재, ⑩로봇,
⑪항공·우주, ⑫첨단 소재·부품·장비,
⑬탄소중립, ⑭방위산업

<추 가></td><td>□ 세부기술 대상 확대

○ 14개 분야 273개 기술

- 1개 신설

<table><tr><th>분야</th><th>세부기술</th></tr><tr><td>방위산업</td><td>글로벌 공급망 진입·안정화 기술</td></tr></table>
※ 1개 기술은 국가전략기술 상향
(미래차: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)</td></tr>
</table>

<개정이유> 첨단 전략산업 R&D 활성화

<적용시기> ’25.7.1. 이후 발생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

3. 인공지능 분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세액공제 사후관리 방안 마련 (조특령 §21⑤·⑩·⑪·⑭·⑯)

현 행	개 정 안
□ **일반제품을 병행**생산하는 경우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로 세제지원하되 사후관리 적용	□ **서비스 제공**(인공지능 분야) **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사후관리 방안** 마련
○ **(관리대상) 일반제품을 병행** 생산하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	○ 서비스 제공 시설로서 **국가전략기술 외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화시설** 포함
○ **(관리기간) 투자완료일부터** 투자완료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**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**	(좌 동)
○ **(관리기준) 사후관리 기간** 동안의 **누적 사용비율**이 **다음 기준**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**전용(轉用)**한 것으로 **간주** - 해당 시설 총 생산량 중 **국가전략기술 사용 제품 판정기준: 50% 초과**	
<추 가>	- **서비스 제공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***: 해당 시설 총 사용시간 중 **국가전략기술 관련 서비스 제공 시간이 50% 초과** * 기획재정부령으로 규정
○ **(전용시 납부세액) 공제세액 상당액**(차액*) **+ 이자상당액** 납부 * (예)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공제세액 – 일반시설 공제세액	○ (좌 동)
○ **(자료제출) 생산량*** 관련 자료 **작성·보관** 및 **제출**(사후관리 마지막 과세연도 법인세 신고시) 의무 * 측정대상, 측정기간, 작성방법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규정	○ **서비스 제공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**의 경우 **연구개발업무시설 규정* 준용** * 사용시간 관련 자료 작성·보관 및 제출 의무

<개정이유> 첨단 전략산업 시설투자 활성화

<적용시기> ’25.1.1. 이후 투자 분부터 적용

4.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특례 가액요건 상향(조특령 §68의2①)

현 행	개 정 안
□ **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**에 대한 양도소득세 · 종합부동산세 특례* *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시 기존 보유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	□ **지원대상 확대**
○ (**주택소재지**) **인구감소지역** - 단, 수도권 및 광역시 구지역은 제외하되, 수도권 내 접경지역은 포함	○ (좌 동)
○ (**주택가액**) 공시가격 4억원 이하	○ **비수도권 가액기준 상향** - 수도권 공시가격 4억원, 비수도권 공시가격 9억원
○ (**적용기간**) '24.1.4.~26.12.31. 취득분	○ (좌 동)

<개정이유>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

<적용시기> '25.8.14.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

5. 동업기업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류 명확화

(조특령 §100의24, 조특칙§46의2)

현 행	개 정 안
□ **동업기업** 소득 계산 및 배분명세 **신고서류**	□ **신고서류 명확화**
ㅇ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**재무상태표**와 **손익계산서**	ㅇ **기획재정부령***으로 정하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*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의 표준재무상태표와 표준손익계산서
ㅇ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분가액조정명세서 ㅇ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등	ㅇ (좌 동)

<개정이유> 동업기업 제출서류 명확화를 통한 납세자 편의 제고

【소득세법 시행령】

1.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자료집중기관 추가(소득령 별표4)

현 행	개 정 안
□ 의료비세액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집중기관 ○ 국민건강보험공단 <추 가>	□ 자료집중기관 추가 ○ 보건복지부

<개정이유> 납세편의 제고

<적용시기>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

2. 퇴직소득 세액정산 방법 보완(대통령령 제35349호 소득령 §203)

현 행	개 정 안
□ 퇴직소득 세액정산 방법 개정	□ 적용대상 축소
ㅇ (내용) 계산방법 보완 - (~25.12.31) ❶**전체 산출세액*** - ❷**기지급 산출세액**** * 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** 기납부 또는 이연된 세액 - (26.1.1.~) ❶**퇴직소득누계액**에 대한 **퇴직소득세액** - ❷**(정산전 이연퇴직소득세액* + 정산전까지 원천징수세액)** * 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을 이연퇴직소득 비율로 안분 계산	ㅇ (좌 동)
ㅇ (대상) 기 지급된 퇴직소득 중 **이연퇴직소득이 있는 자**	ㅇ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자 중 **'25.12.31. 이전 방식**에 따라 계산 시 **환급**이 **발생하는 경우**만 **'26.1.1. 이후 계산 방식 적용**

<개정이유> 납세편의 제고

<적용시기> '26.1.1.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

3.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중과 배제 기간 연장(소득령 §167의3)

현 행	개 정 안
□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**다주택자 중과 배제 및 주택수 제외**	□ 적용기한 연장
ㅇ (**대상주택**)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	
- **수도권 밖의 지역** 소재	
- 전용면적 85㎡, 취득가액 6억원 이하	
- **'24.1.10. ~ '25.12.31. 기간 중 취득**	- **'25.12.31. → '26.12.31.**

<개정이유>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

4. 수용시 주택부수토지 판단 기준일 조정

(소득령 §154⑦ · §167의5 · §168의12)

현 행	개 정 안
□ **주택부수토지 인정범위**	□ 예외 신설
○ (**배율***) 토지의 소재지 · 용도지역별 상이 *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해당 배율을 곱하여 산정된 면적 이내의 토지만 주택부수토지로 인정 - 도시지역 내 토지: ❶ 또는 ❷ ❶ 수도권 내 **주거 · 상업 · 공업지역**: 3배 ❷ 수도권 내 **녹지** 및 **수도권 밖**: 5배 - 그 밖의 토지*: 10배 * 관리지역, 농림지역, 자연환경보전지역 등	○ (좌 동)
○ (**기준일**) 양도일 <단서 신설>	○ 토지수용시 용도지역 판정기준일 예외 신설 - 협의매수 · 수용되는 경우: **사업인정 고시일 직전일**

<개정이유> 수용되는 토지 등에 대한 과세 합리화

<적용시기>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【법인세법 시행령】

1. 인건비 제한 적용대상 비영리법인 범위 명확화(법인령 §56⑪)

현 행	개 정 안
□ 비영리법인 임직원 인건비 한도* 적용대상 * 임직원별 연간 총급여 8천만원 이하	□ 임직원 인건비 한도 적용 비영리법인 대상 명확화
① 수익사업 소득의 **50%**를 **초과**하여 **고유목적사업준비금**으로 **손금산입**한 **장학법인***	ㅇ (좌 동)
*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중 50%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	
② 수익사업 소득의 **50%**를 **초과**하여 **고유목적사업준비금**으로 **손금산입**한 **사회복지법인** 등*	ㅇ (좌 동)
* 사회복지법인, 고유목적사업·일반 기부금 지출액 중 80%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	
③ **해당 사업연도**와 **직전 5개 사업연도** 동안 **수익사업**에서 발생한 **소득 합계액**의 **50%**를 **초과**하여 **고유목적사업준비금**으로 **손금산입**한 비영리 내국법인	ㅇ ① 및 ②에 해당하는 **비영리 내국법인**으로 **해당 사업연도**와 **직전 5개 사업연도** 동안 **수익사업**에서 발생한 **소득 합계액**의 **50%**를 **초과**하여 **고유목적사업준비금**으로 **손금산입**한 비영리 내국법인

<개정이유> 임직원 인건비 한도 적용 비영리법인 대상 명확화

2. CR리츠가 매입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(법인령 §92의2②)

현 행	개 정 안
□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 배제 주택	□ 추가과세 배제 주택 추가
ㅇ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,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	ㅇ (좌 동)
<추 가>	ㅇ CR리츠가 '25.1.1.~'25.12.31.중 매입한 **비수도권 미분양 주택** (취득 후 5년 이내 양도분에 한함)

<개정이유>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

<적용시기>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3. 내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개선 (법인령 §111⑧)

현 행	개 정 안
□ **한국예탁결제원**에 **예탁**된 **국채 등**에서 발생하는 **이자소득**의 **원천징수의무자**	□ **원천징수의무자 범위 추가**
ㅇ 한국예탁결제원에 **계좌를 개설한 자**(이하 "예탁자")가 소유하고 있는 국채등: **한국예탁결제원**	ㅇ (좌 동)
ㅇ 예탁자가 **투자자로부터 예탁**받은 국채등: **예탁자**	ㅇ (좌 동)
<**추 가**>	- 다만, **국제예탁결제기구***가 **예탁자인 경우**로서 **내국법인**으로부터 예탁받은 국채등: **해당 내국법인** *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외국법인

<개정이유> 국채 등 거래 활성화 지원

<적용시기> 영 시행일 이후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

【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】

1.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중과 배제 기간 연장(종부령 §4의3)

현 행	개 정 안
□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부세 **다주택자 중과 배제 및 주택수 제외** ○ (**대상주택**)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- **수도권 밖의 지역** 소재 - 전용면적 85㎡, 취득가액 6억원 이하 - **'24.1.10. ~ '25.12.31. 기간 중 취득**	□ 적용기한 연장 - **'25.12.31. → '26.12.31.**

<개정이유>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

【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】

1.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적용기한 연장 (부가령 §84②·③)

<table>
<tr><th>현 행</th><th>개 정 안</th></tr>
<tr><td>□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*
* 면세농산물 구입시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
○ 공제율
<table>
<tr><th colspan="2">구 분</th><th>공제율</th></tr>
<tr><td rowspan="4">음식점업</td><td>❶ 과세유흥장소 경영자</td><td>2/102</td></tr>
<tr><td>❷ 연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('26.12.31.까지)</td><td>9/109</td></tr>
<tr><td>❸ 연매출액 4억원 초과 개인사업자</td><td>8/108</td></tr>
<tr><td>❹ ❶~❸ 외의 사업자</td><td>6/106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제조업</td><td>❶ 과자점업, 도정업 등 개인사업자</td><td>6/106</td></tr>
<tr><td>❷ ❶ 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</td><td>4/104</td></tr>
<tr><td>❸ ❶~❷ 외의 사업자</td><td>2/102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기 타</td><td></td></tr>
</table>
○ 공제한도
<table>
<tr><th rowspan="2">구분</th><th rowspan="2">연매출액</th><th rowspan="2">기본</th><th colspan="2">우대</th></tr>
<tr><th>음식점</th><th>그 외</th></tr>
<tr><td rowspan="3">개인사업자</td><td>2억원이하</td><td rowspan="2">50%</td><td>75%</td><td rowspan="2">65%</td></tr>
<tr><td>2~4억원</td><td>70%</td></tr>
<tr><td>4억원초과</td><td>40%</td><td>60%</td><td>55%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법인사업자</td><td>30%</td><td colspan="2">50%</td></tr>
</table>
- (적용기한) '25.12.31.
* 우대 공제한도에 적용</td><td>□ 우대 공제한도 적용기한 연장
○ (좌 동)
- '27.12.31.</td></tr>
</table>

<개정이유>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

【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】

1.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 적용기한 신설(국조령 §111①)

현 행	개 정 안
□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 ○ 주주가 소유한 전 세계 **피지배 외국법인**의 **실효세율이 기준세율 미달** 시, **차액분**을 **주주 소재지국에서 과세** ○ **글로벌최저한세 실효세율 계산** 시 **주주 소재지국**에서 **과세된 세액**은 **피지배외국법인**(구성기업)**에 배분**하고, 피지배외국법인의 **세액으로 반영** < 신 설 >	□ 적용기한 보완 ○ (좌 동) ○ (적용기한) '25.12.31일 이전 개시, '27.6.30일 이전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

<개정이유>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(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의 세액(대상조세) 배분은 한시적 운영)

<적용시기> '26.1.1.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추가세액 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